

# 표준근로계약서

(제8조 관련)

서울특별시 강남구(보건소)와 기간제근로자 \_\_\_\_\_(은)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.

1. 근로계약기간 : 2016년 3월 2일(수) ~ 2016년 11월 30일(수)

2.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

- 근무장소(부서) : 보건소 1층 구강보건실
- 업무내용 : 구강보건실 치과진료 및 구강보건사업 업무지원(보조)
  - 민원접수 및 안내, 구강보건실 업무지원
  - 통합건강증진사업 업무지원 : 어린이 불소도포 사업, 노인 불소도포·스케일링사업

3. 근로 및 휴게시간

- 근로시간 : 09:00 ~ 18:00 (8시간)
- 휴게시간 : 12:00 ~ 13:00 (1시간)

4. 근로 및 휴일

- 근로일 : 월 ~ 금 (주 5일, 공휴일 및 국경일 제외)
  - \* 사용부서 및 기간제근로자와 합의하여 변경조정 가능
- 유급휴일 : 1주 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주 1일, 근로자의 날(5/1)

5. 휴 가

- 연차 유급휴가 및 생리휴가는 「근로기준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.
  - \*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음.

6. 임 금

- ① 일 급 : **금71,550원**(주·월차수당 지급)
- ② 명절상여금 : 없음( ), 있음( ○ ) 금30,000원
- ③ 수 당 : 없음( ), 있음( ○ ) 금20,000원(매월 지급, 1할 계산)
- ④ 지 급 일 : **매월 5일(전월 임금 지급)**
- ⑤ 지급 방법 : 기간제근로자의 예금통장에 입금 ( 은행, )

## 7. 기 타

- 가. 기간제근로자는 강남구(보건소)가 지정한 관리자의 정당한 직무지시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- 나. 기간제근로자는 매일 일일 근무상황부에 근로시간 등을 기재하고 강남구(보건소)가 지정한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
- 다. 기간제근로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, "기간제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강남구(보건소)나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재산상의 손실,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, 민.형사상의 책임을 진다.
- 라.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.
- 마.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「근로기준법」 등 노동관련법령 및 통상 관례에 따른다.
- 바. 기간제근로자가 무단으로 결근, 지각, 조퇴를 하거나 근무시간 중 음주, 동료 또는 시민과 싸움, 성희롱,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경우 2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(근로계약 해지시 서면으로 이를 통보한다).
- 사.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각자가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 이행하기로 서약하며,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강남구(보건소)와 기간제근로자가 서명 또는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6년 3월 일

강남구(보건소) 주 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668  
기 관 명 : 강남구보건소  
대 표 자 : 강남구보건소장 서명옥 (인)

기간제근로자 주 소 :  
주민등록번호 : - (휴대전화 : )  
성 명 : ( 인 )

## < 보안서약서 >

본인은 강남구에서 실시하는 보건소 진료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「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(개인정보의 이용·제공 제한)」 및 「지방공무원법 제52조(비밀엄수의 의무)」의 규정에 의거 업무상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위반 시 민·형사상의 책임 등 어떠한 책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2016년 3월 일

서약자 : 주민등록번호 -

성명 (인)

강남구보건소장 귀하